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51) Int. Cl. ⁵ A61K 31/20	(11) 공개번호 특 1994-0018089	(43) 공개일자 1994년 08월 16일
(21) 출원번호	특 1994-0001317	
(22) 출원일자	1994년 01월 25일	
(30) 우선권주장	9301446.2 1993년 01월 26일 영국(GB)	
(71) 출원인	스코티아 홀딩스 피엘씨 카트리오나 프란세스 마르	
(72) 발명자	영국, GU1 1BA, 서레이, 길포드, 우드브릿지 미도우즈, 에파몰 하우스 데이비드 프레데릭 호로빈	
(74) 대리인	영국, GU1 1BA, 서레이, 길포드, 우드브릿지 미도우즈, 에파몰 하우스, 스코티아 홀딩스 제약주식회사내 캐서린 안 스코트 영국, GU1 1BA, 서레이, 길포드, 우드브릿지 미도우즈, 에파몰 하우스, 스코티아 홀딩스 제약주식회사내 조의제	

심사청구 : 없음

(54) 내부조직의 방사선 손상에 대한 예방 및 처치방법

요약

전리선에 노출됨으로서 신체의 내부조직, 특히 중추신경계에 대한 손상은 감마리놀렌산(GLA) 및/또는 디호모감마리놀렌산(DGLA)의 투여에 의해 예방되거나 처치된다. 그러나 처치나 예방을 위해 GLA 및/또는 DGLA를 함유하는 약물은 또한 에이코사펜타에논산(EPA) 및/또는 도코사헥사에논산(DHA)을 더 구상한다.

명세서

[발명의 명칭]

내부조직의 방사선 손상에 대한 예방 및 처치방법

본 내용은 요부공개 건이므로 전문내용을 수록하지 않았음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전리선(電離線)에 노출된 결과로 의한 신체의 중추신경계나 다른 내부조직의 손상에 대한 처치 또는 예방을 위한 약물의 조제방법에 있어서, 약리학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희석액이나 담체와 함께 감마리놀렌산(GLA)이나 디호모감마리놀렌산(DGLA) 또는 양쪽이 선택적으로 상기 약물로서 조제되고, 그 약물은 임의로 에이코사펜타에논산(EPA)이나 도코사헥사에논산(DHA) 또는 양쪽을 선택적으로 더 함유함을 특징으로 하는 약물의 조제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약물은 1일 1mg 내지 100mg, 바람직하게는 10mg 내지 10g, 매우 바람직하게는 100mg 내지 5g의 투여량에서 상기 산이나 각 산의 투여에 적합한 형태에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약물의 조제방법.

청구항 3

제 1 항 또는 2항에 있어서, 상기 약물은 비경구나 장내로의 투여를 위한 조성물 또는 식품조성물이며, 상기 산이나 각 산의 농도는 0.01 내지 50중량%, 바람직하게는 0.1 내지 20중량%, 매우 바람직하게는 1 내지 10중량%임을 특징으로 하는 약물의 조제방법.

청구항 4

전리선에 노출된 결과로 의한 신체의 중추신경계나 다른 내부조직의 손상에 대한 처치 또는 예방에 사용될 때 에이코사펜타에논산(EPA)과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감마리놀렌산(GLA), 디호모감마리놀렌산(DGLA), 또는 감마리놀렌산(GLA) 및 디호모감마리놀렌산(DGLA).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산 또는 산들은 제 2 항에서 기재된 상기 산이나 각 산의 1일 투여량을 투여하기에 적당한 형태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감마리놀렌산(GLA), 디호모감마리놀렌산(DGLA), 또는 감마리놀렌산(GLA) 및 디호모감마리놀렌산(DGLA).

청구항 6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산 또는 산들은 제 3 항에 기재된 조성물의 형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감마리놀렌산(GLA), 디호모감마리놀렌산(DGLA), 또는 감마리놀렌산(GLA) 및 디호모감마리놀렌산(DGLA).

청구항 7

전리선에 노출된 결과로 의한 신체의 중추신경계나 다른 내부조직의 손상에 대한 예방처치를 포함하는 처치방법에 있어서, 에이코사펜타에논산(EPA)이나 도코사헥사에논산(DHA) 또는 양쪽과 선택적으로 결합된 감마리놀렌산(GLA), 디호모감마리놀렌산(DGLA), 또는 양자의 효율적인 처치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투여됨을 특징으로 하는 처치방법.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산이나 각 산의 1일 투여량은 1mg 내지 100g, 바람직하게는 10mg 내지 10g, 매우 바람직하게는 100mg 내지 5g임을 특징으로 하는 처치방법.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산은 제 3 항에 기재된 조성물의 형태로 투여됨을 특징으로 하는 처치방법.

※ 참고사항 : 최초출원 내용에 의하여 공개하는 것임.